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3파산부

우)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 ☎ 530-2630 / 팩스 530-2755 / 주심: 정준영 판사

시행일자 2012. 10. 11.

수 신 채무자 (주)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 신광수

제 목 회생채권자등의 목록 작성절차 및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신고 안내절차

- 채무자 (주)웅진홀딩스에 대한 이 법원 2012회합185호 회생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법원은 2012. 10. 11.자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제출받은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작성하는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이 부실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권리의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는 채권자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상거래상·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등의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회생채권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다음 사항을 우편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채권자들이 그 권리를 보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회생절차개시결정일자 : 2012. 10. 11. 10:30
-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 : 2012. 10. 11.부터 2012. 10. 31.까지
-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및 장소 : 2012. 11. 1.부터 2012. 11. 14.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 (4)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기간 및 이의 제출 장소 : 2012. 11. 15.부터 2012. 11. 3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 (5) 제1회관계인 집회기일 및 장소 : 2012. 12. 27.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

재판장 판사 이종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3파산부

### 통지서

수신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의 대표이사,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사건 2012회합185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4층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신광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2. 10. 11. 10: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 가.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 나.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본다.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2012. 10. 11.부터 2012. 10. 31.까지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 2012. 11. 1.부터 2012. 11. 14. 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4. 조사기간 및 이의제출 장소 : 2012. 11. 15.부터 2012. 11. 3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5.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일시 및 장소: 2012. 12. 27.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
6.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12. 11. 14.까지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2. 10. 11.

재판장 판사 이종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  
통지서

수신인 수신처 참조

사건 2012회합185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4층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신광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2. 10. 11. 10: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 가.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 나.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본다.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2012. 10. 11부터 2012. 10. 31까지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 2012. 11. 1부터 2012. 11. 14 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4. 조사기간 및 이의제출 장소 : 2012. 11. 15부터 2012. 11. 3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5.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일시 및 장소: 2012. 12. 27.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
6.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12. 11. 14까지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2. 10. 11.

재판장 판사 이종석

수신처 :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서울특별시장, 중구청장, 중부세무서장, 끝.

## (주)웅진홀딩스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

사 건 2012회합185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4층  
대표이사 신광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시 : 2012. 10. 11. 10:30
2. 관리인 :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봄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2012. 10. 11.부터 2012. 10. 31.까지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 ① 신고기간 : 2012. 11. 1.부터 2012. 11. 14.까지
  - ② 신고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5.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및 이의제출 장소 : 2012. 11. 15.부터 2012. 11. 30.  
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남관 1층 종합민원실  
파산과 접수처)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일시 및 장소
  - ① 일시 : 2012. 12. 27. (목) 14:00
  - ②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
  - ③ 목적사항 : 채무자의 대표이사의 보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7. 유의사항
  - 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12. 11. 14.까지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2. 10.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

재판장	판사	이종석
	판사	정준영
	판사	김장훈